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4년 3월 16일

· 회부일자 : 1994년 3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제1차 건설위원회 (1994. 3. 22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조 성 복

가. 제안이유
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('93. 12. 31)에 의거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설계등의 심의 대상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

나. 주요골자

○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대상금액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를

→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공사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대통령령 제 14,09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거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6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 부 서 류

가.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(안) 1부.

나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